

2023. 1. 1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02-2133-5410
직업건강팀장	안희숙	02-2133-5431
담당자	윤지은	02-2133-559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 서울시, 교통사고·추락·부상 등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발간

- ‘거리미화원’, ‘쓰레기·재활용품수거원’, ‘건물청소원’ 3개 직종, 현장서 즉시적용 가능
- 작업 중 위험상황부터 유형별 사고 예방법 등 쉽게 설명, 상시점검표 통해 수시로 상황 확인도
-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칙도 함께 담아
- 구청 민원실, 은행 등에서 소책자 2만부 무료 배포, 시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 (거리미화원) 도로변 비질 작업을 할 때는 차량 흐름 반대 방향으로, 보도와 최대한 가까이 밀착해 움직입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쓰레기 수거차량 과적은 절대 금지하며, 적재물 상단에는 접이식 그물망을 설치해 물건이 도로 등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건물청소원) 건물 외부 작업시 강풍·돌풍이 불면 작업을 중지하고, 신체와 도구 등을 지지해주는 로프 고정매듭과 마모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 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재활용수거원 ③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청소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지만 과도한 육체노동과 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러한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으로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거리미화원’, ‘쓰레기·재활용품수거원’, ‘건물청소원’ 3개 직종, 현장서 즉시적용 가능 >

□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③건물청소원들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또 각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 (거리미화원)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수거 중 찢림·베임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이동 중 넘어짐,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 예방법 등을 수록했다.
- (건물청소원)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 및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 등을 담았다.

□ 특히 이번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하도록 분야별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용을 구성했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칙도 함께 담았다>

- 아울러 지침서에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 이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았다
  
- 이번에 발행하는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http://www.seoul.go.kr))에서 파일(pdf)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 직업성질환 예방지침

서울특별시

두깨 매겨  
특별시 생활

노동자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사고 · 직업성질환 예방지침

## 청소 노동자



- 거리미화원
- 건물청소원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 유형별 사고 예방법



####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 사고



##### 예방대책

- 차랑이동 반대방향으로 작업 진행
- 작업진행 전방에 손수레 등을 배치해 작업공간 확보
- 야간 작업 시 반사띠 등이 부착된 작업복 및 도구 사용
- 어두운 새벽, 야간 작업 최소화 및 제한

#### 가로 청소 및 이동 중 넘어짐



##### 예방대책

- 앞쪽을 보이며 작업 진행
- 작업 및 이동 시 장애물 등 바닥상태 확인
- 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

#### 중량물 취급 중 급성요통



##### 예방대책

- 작업한 쓰레기 등은 20kg이하로 분리 포장해 이동
- 포장단위가 작고 손잡이가 있는 수거용기 사용
- 작업물을 들고 이동 시 짧은 거리라도 손수레 활용

#### 낙엽 수거 중 찰림 · 베임



##### 예방대책

- 수거 전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
- 안전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쓰레기 수거 전용도구 사용

### 유형별 사고 예방법



#### 도보 이동 중 넘어짐



##### 예방대책

- 수거차량 속도 및 작업속도 일정하게 유지
- 무리한 수거물 운반 지양
-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

####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 예방대책

- 적재함 최상단에 접이식 그물망 설치
- 과적금지
- 차량 이동 중 적재함 탑승 금지

#### 중량 수거물 취급 중 급성요통



##### 예방대책

- 작업 시 적정무게 취급
- 20kg이상 수거물 운반 시 여러 명이 함께 작업 (협업 시 구호 사용으로 무리한 힘금지)

#### 수거차량 화전판 작동 중 끼임



##### 예방대책

- 협학 저압 안전장갑 착용
- 화전판 작동 시 점근금지장치 설치
-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



- ✓ 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 유해물질 취급 및 사용 시 눈 호흡기 피부 보호 기능
- ✓ 작업화 | 물 청소 시 방수 미끄럼방지 기능-경량 대형 청소도구 사용 시 발 보호 기능-경량
- ✓ 계절용품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 ✓ 일반청소도구 | 가벼운 무게, 손잡이가 긴 형태
- ✓ 대형청소도구 | 경량화된 무선 충전식 형태



- ✓ 안전모 안전대 | 고소 작업 시 떨어짐 및 벽체와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 최소화
- ✓ 지지로프 | 마모 부식, 풀림 등의 변형이 없는 형태

### 한 번 더 확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표

점검항목	예	아니오
1.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후 다시 작업 시작	
2.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 1개월 이내 제출 및 재해 재발방지 마련		
3.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	
4. 작업환경측정	반기별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5. 건강진단	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	
6.	6~24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7. 위험성평가	매년 사고-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8. 유해요인조사	3년 주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실시	
9.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사용 시 화학물질(세제류 등)의 안전성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유해성 유지	
10. 보호구 및 작업도구	작업 형태에 따른 필요 보호구 지급	
11.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한방수마스크, 작업복 등	
12.	가벼운 청소도구 지급 (무선 충전식 청소도구 권장)	
13.	위생 및 휴게시설	휴게시설 설치-제공
14.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 설치-제공	
15.	가상복보(주요보 및 경보) 발생 시 가상상환 전달	
16.	지원하고 깨끗한 식수 및 그늘, 휴게장소, 휴식시간 제공	
17.	목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	
18.	방한장구(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와 온수-휴게장소 제공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안전사고·직업성 질환 예방수칙

- 사업주-노동자 작업중지 시행 (급박할 위험 등 발생 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산업재해 조사·보고 제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 (분기별, 3시간 이상)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 작업환경측정 실시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노출 시, 반기별)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 1회 이상)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7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시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노출 시, 6~24개월별)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 제202조 ※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 확인(시행규칙 [별표23])
-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이상)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3년 1회 이상)  
관련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화학물질 사용 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